

광주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가합51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인수청구의 소등]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 2016. 11. 23 선고 2015나372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가합5113 판결

전문

원고A

피고B

변론종결 2014. 10. 17.

판결 선고 2014. 10. 24.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480,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88,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인수 청구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 8.경 원고의 명의를 빌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입찰하게 하여 2006. 8. 3. 211,100,000원에 낙찰받아 2006. 9.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06. 12. 2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가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소유권을 이전해가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명의로 남아있게 됨으로써 아래와 같이 합계 약 88,08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 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부과된 취득세, 재산세 등 합계 20,480,670원
-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유치권자가 원고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입은 손해액 1,100만 원
- ③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장애인연금과 국가기초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입은 손해액 5,660만 원(=장애인연금 8년분 1,700만 원 + 국가기초생계급여 8년분 3,360만 원 + 집수리사업 지원금 600만 원)

나. 판단

1) 가의 ①항의 손해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부과된 취득세, 재산세 등 합계 20,480,67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480,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의 ②③항의 손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손해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명의로 남게 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영남

판사김동관

판사유병호

별지